



#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출품규정

Korea Landscape \* Garden Expo 2021

## 3. 4(목) ▶ 7(일) COEX

### 제 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층 리드엑스포를 말한다.

### 제 2조(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3조(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5조(납입조건)

1. 참가자는 참가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참가비의 50%)을 납입하고, 잔금(참가비의 50%)을 주최자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6조(해약 및 전시회의 취소)

1.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참가취소)는 주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해지의사 표시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최자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약정 해지 후 1주일 이내에 참가자가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 ①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50%
  - ② 전시회 개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70%
  - ③ 전시회 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 전까지 : 총 참가비의 100%
2. 위 1항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①, ②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가 1년 이내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주최자와 협의 하에 해당 전시회의 참가비로 유예시킬 수 있다.
  - ③의 경우에는 참가비 유예가 일체 불가하다.
3.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 8조(전시품 및 장치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 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장치물 및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0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1조(보증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증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2조(분쟁해결)

1. 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